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97
----------	-------

발의연월일 : 2026. 6. 4.

발 의 자 : 백선희 · 이해민 · 박희승
이수진 · 남인순 · 황운하
정준호 · 김준형 · 한창민
서왕진 · 손명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보험가입,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2월 초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대규모 오지급 사고에서 드러나듯,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관리 및 내부통제 역량은 급격히 성장한 시장 규모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특히 최근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의 실시간 연동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이 부재하다는 점,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원칙

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가상자산 잔고와 내부 장부 잔고의 실시간 연동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하여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은 잔고 불일치 또는 비정상적 대량 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2(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가상자산사업자는 제8조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내부통제기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임면 및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2(가상자산 잔고와 내부 장부 잔고의 실시간 연동 등)</u> <u>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 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하여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은 잔고 불일치 또는 비정상적 대량 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
<u><신 설></u>	<u>제8조의2(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u> <u>가상자산사업자는 제8조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u>

<신 설>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2(내부통제기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임면 및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략) <u><신설></u> <u>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u> <u><신설></u>	<u>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2조(과태료) ① ----- ----- ----- -----. 1. ~ 8. (현행과 같음) 9. <u>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아니한 자</u> <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1. <u>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u> 2. <u>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u>
---	--